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그리고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

박 종 찬*
장 금 주**

대우전자의 분식회계는 그룹회장이 회사의 저조한 성과를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성과를 재무제표에 나타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관련 임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재고자산의 과대 계상, 매출원가의 과소 계상, 가공 매출채권의 인식, 차입금의 누락 등의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한편, 대우전자의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실사, 부외부채에 대한 조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마땅히 해야 할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였고,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및 대우전자의 이사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약 8년에 걸친 공방 끝에 피해액의 60%를 가해자인 대우전자의 이사와 외부감사인이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약 100억원에 달하는 전체 배상금의 대부분은 변제력 있는 외부감사인이 배상하였다. 현행법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부실표시를 직접 행한 경영인과 이를 적발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에게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변제력 있는 외부감사인이 배상액의 대부분을 배상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

주제어: 분식회계, 부실감사, 감사절차, 감사인의 책임

1. 서론

1967년 창립 이래로 세계시장 진출을 지향해 온 대우그룹은 주로 부실기업 인수를 통하여 급성장해 왔으며, 1990년대에는 세계경영을 표방하며 범세계적인 기업집단으로의 성장을 지향하였다(이명곤·이화득 2004, 185-186). 그러나 주로 차입에 의한 성장전략을 추구해 온 대우그룹은 1997년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패하였다. 1999년 8월 (주)대우전자(이하 '대우전자'라 칭함)를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의 채권단은 대우그룹 계열사의 지구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업재무

구조개선작업(workout)의 개시를 결정하였다. 채권단의 요청에 의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회계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실제 순자산가액이 총 30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보도가 나왔고, 1999년 11월 4일 대우전자의 부채액이 자산을 2조 6,823억원이나 초과한다는 실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됨으로써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사실이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발생과정과 분식회계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내용을 회계감사기준에서 제시된 적법한 감사절차와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소송 과정과 그 결과를 서술한다. 더불어 본 사례는 회계감사를 수감하는 수감생

논문접수일: 2009. 12. 08. 게재확정일: 2010. 05. 06.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jcpark@uos.ac.kr), 교신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spring2030@uos.ac.kr)

들에게 재고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및 부외부채 등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필수적 감사절차를 현실감 있게 이해하고, 외부감사 관련 제반 법규 및 제도를 학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대우전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감사인의 과중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하 본 사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제2장은 대우전자 분식회계의 진행과정과 분식회계에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하고, 제3장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다. 제4장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현행법의 세부 규정과 대우전자 소액주주의 실제 소송과정 및 그 결과를 설명하며, 제5장은 본 사례의 시사점을 기술하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및 법규를 기술하며 마지막으로 현행법이 규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최근 개정 움직임을 소개한다.

II. 대우전자의 분식회계¹⁾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1998년 2월초 대우전자의 1997년도 가결산 재무제표가 자산 3조 2,283억원, 부채 4조 1,254억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당기순손실이 1조 6,701억원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자, 당시 대우전자의 대표이사에게 당기순이익이 약 410억원이 되도록 분식결산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대표이사는 재무담당 전무이사 등을 통하여 대우전자의 각 사업장별 경리팀장에게 결산을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 대우전자의

회계담당 실무자들은 1997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기준을 위반하였다.

첫째,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현업 부서 재고수불부상의 실제 재고수량보다 과다 표시하고, 중계무역을 통하여 이미 매출된 상품 및 통관되어 제조과정에 투입된 수입물품을 비용(매출원가)으로 계정 대체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재고자산 6,037억원을 과대 계상하였다. 둘째, 수년 전부터 1997년말까지 발생한 외환차손, 판매관리비, 매출원가를 포함하는 제비용 6,607억원을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외화외상매출금으로 계정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채권 6,607억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이와 같이 가공 계상된 매출채권과 실제 매출채권 465억원을 어음차입금 7,072억원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매출채권 465억원을 과소 계상하였다. 셋째, 1997년에 발생한 외환차손,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등의 제비용 1,399억원 및 매출채권 7,072억원(가공 매출채권 6,607억원과 실제 매출채권 465억원)과 어음차입금 8,471억원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부채(어음차입금) 8,471억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넷째, 1997년말 당시 이미 채무자의 부도와 담보 부족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860억원을 대손처리하지 않아 86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다. 다섯째, 수년 전부터 1997년말까지 현업 부서에서 불용·폐기 처리한 유형자산 2,184억원을 폐기손실로 기록하지 않고, 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73억원을 장부에 계상하는 등 유형자산 1,920 (= 2,184 - 273 + 9)억원을 과대 계상하였다. 여섯째,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면서 수년 전부터 1997년말까지 경리·결산 관련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근속연수를 1년 줄이고, 연월차 수당을 퇴직급여 산정대상인 급여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1)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내용은 제1심 판결(2000가합78858, 85856), 항소심 판결(2005나22673, 22680), 상고심 판결(2006나16758, 16765)과 최종 파기환송심 판결(2007나107783, 107790)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퇴직급여충당금 293억원을 과소 계상하였다. 그 결과, 1997년도 대우전자의 자산이 4조 636억원, 당기순이익이 414억원인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대우전자의 외부감사인은 1997년 대우전자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998년 2월 28일 공시하였으며, 대우전자는 1998년 3월 31일 위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1998년도에도 1997년도와 유사하게 김우중 회장은 1998년도 가결산 재무제표에서 자산 3조 9,056억원, 부채 4조 8,379억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당기순손실이 1조 9,920억원에 이르자, 1999년 3월 대우전자의 대표이사과 부사장에게 당기순이익이 약 50억원이 되도록 지시하였고, 이들은 다시 사업장별 경리팀장에게 분식결산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식회계 방법을 보면, 1997년과 같은 방법으로 재고자산 6,709억원(1997년분 6,037억원)을 과대 계상하고, 둘째, 1998년에 발생한 외환차손, 판매관리비, 매출원가 등의 제비용 1,689억원을 가공의 외화외상매출금(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계정 대체하였으며, 1997년말의 부외부채(어음차입금) 8,471억원을 1998년초의 차입금 결제일에 부채로 환원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을 가공의 외화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가공의 외화외상매출금 중 311억원을 장·단기대여금, 미착시설채와 같은 자산항목으로 계정 대체함으로써 총 9,384억원(1997년분 465억원 공제)의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였다. 셋째, 1997년과 같은 방법으로 대손충당금 1,061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유형자산 2,256억원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퇴직급여충당금 305억원을 과소 계상하였다. 넷째, 1998년에 발생한 외환차손, 지급수수료, 매출원가 등의 제비용 251억원을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정 대체하는 방법으로 장·단기대여금 251억원을 과대 계상하였다. 결과적으로 1998년도는 자산 5조 8,717억원, 당기순이익이 45억원인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III.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대우전자의 1997년도와 199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구체적인 부실감사 내용을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적법한 감사절차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원재료 및 미착품 등의 재고자산에 감사

재고자산이 전체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여 금액적 중요성이 크다면 감사인은 중점 감사항목으로 선정하여 실재성 및 평가에 대한 경영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인은 실사 입회시 수량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전체 재고자산에 대한 명세서를 징구하여 전체 모집단에서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실사 혹은 입회실사의 절차를 통해 전체 재고자산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담당자와의 질문 혹은 관련 문서검사 및 실사를 통해 재고자산에 대한 진부화(obsolete) 및 장기체화(slow-moving) 재고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대우전자 외 부감사인은 대우전자의 재고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대우전자에게 전체 재고자산수불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방대하여 출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실제로 존재하는 재고품목만이 기재된 일부 수불부만 제출받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표본검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일

부 표본만을 추출함으로써 상당 부분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실제 수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나 진부화 또는 장기체화 재고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못했다. 또한 재고자산의 자료가 방대하여 출력이 곤란하다면 적어도 컴퓨터 내에서 재고자산의 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는가를 평가할 수 있었음에도 컴퓨터를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다.

미착품의 경우 기말에 직접 실사가 어려우므로 실제성과 관련된 감사위험이 높으므로 신용장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만일 감사인이 실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보충적 감사절차를 실시해야 한다.²⁾ 그러나 외부감사인은 임의적인 샘플링에 의해 단 4개의 신용장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였으나 검토하지 않은 증빙 6개를 포함하여 10개의 증빙을 확인하였다고 감사조서에 기재하였다. 또한 1998년도 미착품 명세서상의 일부를 표본 추출하여 대우전자에게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받지 못했고 이에 관해서도 아무런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회사가 관련 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통해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자산과 관련한 통제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입증절차를 확대하여 실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최소한의 필수 감사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착품항목으로 허위 계상된 금액이 1997년도에 175억원, 1998년도에 158억원이 었지만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3.2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

부외부채는 어음차입금이 과소 계상될 위험이 높은 중점 감사항목으로 계정명세서에는 기재되지 않

으나 기중 거래가 있었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모두 조회절차를 수행하고, 어음·수표에 대한 사용, 폐기, 미사용 매수의 확인 등 어음 발행의 마감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은 대우전자로부터 1997년말을 기준으로 한 차입금명세서를 제출받고, 위 명세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부채의 실제 존재여부를 조회하였다. 그러나 위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대우전자와 거래가 있었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중 일부가 대우전자의 회계장부상 차입금 내역에 누락되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였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감사 당시까지의 당좌거래원장을 제출받아 대차대조표 기준일 이후 확인 가능한 상당기간 동안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부채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1998년 1월 8일 까지의 당좌거래원장만을 제출받음으로써 만기가 그 이후인 다수의 어음채무(부외부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외부감사인은 차입금 감사를 수행하면서 대우전자에 보조부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제출받지 못하여 모집단 확보에 실패하였다. 그밖에 어음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외부채는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원장을 제출받아 차입금명세서와 비교·검토하면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도 이와 같은 감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997년도에 외부감사인이 적발하지 못한 어음차입금이 8,471억원에 달한다. 대우전자의 1997년도 자산총액은 전년에 비하여 3,990억원이 증가했는데 반해 단기 차입금은 1,553억원 감소했으므로 부외부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도 외부감사인은 수습 회계사로 하여금 금융기관 거래조회를, 비회계사로

2) 보충적 감사절차로 미착품 증가율을 고려하거나 관련 자산의 비율을 분석하는 등의 분석적 절차를 실행할 수도 있다.

하여금 당좌거래원장과 어음수표수불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시·감독·검토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3.3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감사

감사인은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퇴직금추계액의 검토는 물론 당기 설정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본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표본 크기를 결정하여 문서검사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즉 통계적 방법이나 비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동 표본에 대한 인사카드와 추계액명세서를 비교·검토해야 하며 개인별 추계액명세서 상의 직원 및 추계액 계산기준이 되는 월평균 급여의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조·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대우전자 외부감사인은 1997년도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감사시 표본감사 절차를 생략한 채 단지 퇴직금추계액에 대한 분석적 검토만으로 감사절차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대우전자는 1998년도에 대한 외부감사 당시 전 직원의 근속연수를 1년씩 줄이면서 경리·결산팀만 올바르게 기재하고, 임직원 근속연수 차감 사실을 은폐하고자 경리·결산팀 임직원들의 인사카드만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외부감사인은 대우전자의 총 20,400여 명의 직원 중 20명(경리부서 직원 10명, 기타 10명)만을 표본 추출하여 그 중 경리부서 직원 5명에 대하여만 인사카드와 추계액명세서의 근속연수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퇴직급여충당금 과소 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외부감사인은 연월차 수당을 퇴직급여 산정대상 총 급여에 산입하지 않음과 동시에 직원의 근속연수를 1년 줄이는 방법으

로 퇴직급여충당금 293억원(1997년) 및 305억원(1998년)을 과소 계상한 것을 적발하지 못했다.

3.4 실무책임 회계사의 문제 제기

1998년도의 감사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실무책임 회계사가 1999년 3월 24일에 작성한 감사요약철에는, “매출채권 충당금검토를 위한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검토하지 못함”, “재고자산의 진부화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검토할 수 없음”, “재고자산, 시험연구비, 미수금, 예치보증금 등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료 미제시로 감사하지 못함”, “감사 중 부외부채 발견 → 전반적인 은행계정의 신뢰성 문제제기”라고 언급하면서 종합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의 담당파트너는 1999년 3월 25일 감사요약철을 작성하면서 부외부채 감사결과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하는 “N/A”를 표기하고 종합감사의견란에는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일부에 대하여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현장총괄자인 실무책임 회계사의 서명날인란에 자신이 실무책임회계사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감사의견 중 한정 의견은 특정 부분에 대하여만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여 판단을 보류할 뿐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걱정하다는 의견인데 비해 의견거절은 회사의 재무제표 전반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한정 의견과는 그 의미나 효과가 큰 차이가 있다. 외부감사인이 1998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는 해외매출채권 1조 3,822억원, 광주공장 재고자산 2,603억원 등 합계 1조 6,425억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일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걱정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대우전자의 자산규모가 5조 8,717억원임을 고려하면 1조 6,425억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이므로 의견거절을 표명해야 옳다. 실제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 의견을 표시한 1조 6,425억원 중 1조 1,600억원(해외매출채권 9,384억원, 광주공장 재고자산 2,216억원)은 허위자산으로 추후 확인되었다.

회계감사기준에 의할 때 외부감사인은 고유위험이나 통제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입증절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입증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표본감사 설계시 표본위험이 수용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표본크기를 결정해야 하며,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을 추출하였다면 모집단의 잔여 부분에 대하여도 추가적 감사절차를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우전자의 외부감사인은 최소한의 필수적 감사절차를 실행하지 못했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부정과 오류의 존재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많은 사정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 또는 한정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감사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IV. 대우전자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

4.1 현행법상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당시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투자금융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칭함)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칭함)에 명시되어 있다.³⁾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은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 작성하는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 명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신고자(법인)와 당해 법인의 이사(등기이사),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 기업의 이사,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주체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뜻으로 각 책임주체들 간에는 부진정연대책임(jointly and severally liability)이 성립한다(김건식 2006, 147-148).⁴⁾ 또한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5는 사업보고서, 반기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칭함)의 경우에도 제1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 하는데 이에 따라 유가증권의 발행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도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기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주체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외감법 제17조 제2항과 제7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감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

3) 구 증권거래법은 현재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었다. 구 증권거래법과 현 자본시장법상에 명시된 허위기재와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조항의 비교는 <부록>을 참조하라.

4) 부진정연대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공동가해자 중 1인 또는 일부에게 피해액 전액의 배상을 요구할 경우 우선 배상하고, 배상한 가해자는 다시 다른 공동가해자에게 자신이 배상한 금액 중 그들의 책임부분에 대해 배상을 추후에 요구하는 권리(구상권)를 가짐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 다만, 부실표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김건식 2006, 148).

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감법 제17조 제4항은 감사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등기이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연대책임도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불법행위자인 당해 회사의 이사와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을 같은 수준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하고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부과함을 의미한다(곽관훈 2005, 142; 이창우 등 2006, 15-16). 따라서 손해배상 능력이 있는 외부감사인이 일단 피고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결정이 날 경우 나중에 불법행위를 주도한 회사 또는 이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원고의 손해액 전부를 우선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만약, 불법행위를 주도한 회사 또는 이사가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모든 배상액을 외부감사인이 부담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4.2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2000년 10월 24일 대우전자 소액주주(개인투자자) 359명을 원고로, 대우전자, 김우중 회장을 포함한 대우전자의 이사, 외부감사인 등 11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었다. 제1심 판결은 2005년 1월 13일에 선고되었는데 피해자인 원고측의 과실부분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의 형평을 고려

하여 분식회계를 주도한 김우중 회장과 대우전자의 전 대표이사 등은 피해액의 40%를, 외부감사인은 30%를, 대우전자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그 외 등기이사들은 20%를 배상하도록 명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약 1년 후인 2006년 1월 18일에 선고되었는데 피고측이 일률적으로 피해액의 30%를 배상하도록 명하였다.⁵⁾ 그 후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은 2007년 10월 25일에 선고되었는데 원고측의 과실이 너무 높게 인정되었다는 원고측의 주장과 손해배상액의 일부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와 관련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의 판결은 2008년 9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김우중 회장, 전 대우전자 대표이사, 외부감사인이 상고한 원고의 피해액의 60%를 배상하도록 명하였다.⁶⁾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와 원고측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4.2.1 소멸시효

피고측은 원고인 개인투자자들이 이미 분식회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상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⁷⁾ 그 근거로 대우전자는 1998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1999년 7월 19일 대우그룹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이 발표되었으며, 1999년 10월 19일 및 10월 22일에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신문기사가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지적

5) 항소심 판결 이전에 원고측과 피해액의 배상을 합의한 사외이사를 포함하는 피고 6인은 소송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항소심 판결은 이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미 합계 7억 6천만원을 변제받았음도 감안하였다.
 6) 피고인 외부감사인이 원고인 소액주주에게 배상할 금액은 원고과 이사 등 총 100억여원에 이르며, 이는 그간 소액주주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로 얻어낸 배상액 중 가장 크다(한국경제신문 '옛 대우전자 주주들, 회계법인에 100억대 승소' 2008년 9월 27일).
 7)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등의 효력이 발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증권거래법 제16조, 제186조의 5). 외감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증권거래법과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같다(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외감법 제17조 제7항).

하였다. 대우전자 손해배상소송 제기일은 2000년 10월 24일이므로 분식회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신문기사가 보도된 날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일반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피고측이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분식회계 사실이 일반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대우전자에 대한 실사 결과가 발표된 1999년 11월 4일이므로 1년이 경과되기 이전이라고 판단하였다.

4.2.2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⁸⁾ 그러나 투자자의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배상의무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공시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취득자가 취득시에 허위공시를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역으로 가해자가 무과실을 입증하거나

피해자가 허위공시를 이미 알고 주식을 취득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은 배상의무자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표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외감법 제17조 제5항은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⁹⁾ 이와 같이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이 입증책임을 민법과 달리 원고에서 피고로 전환시키고, 피고가 면책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 이유는 만약 피해를 본 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면 정보의 부족 등 그 입증의 극히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고, 상대적 약자인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서울고법 2008. 9. 26. 선고 2007나107783).¹⁰⁾

대우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피고에 해당하는 김우중 회장 및 당시 대우전자 이사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허위의 기재가 있음을 알 수 없었거나 원고가 이미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사실을 알고 주식을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 피고측은 사업보

8)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의 하나로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대법원 89다카1275 판결(1991. 7. 23. 선고)은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극난 내지 불가능 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가해 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판시하였다.

9) 2008년 2월 외감법 개정으로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감사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환원하였다.

10) 미국의 경우 발행시장(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피고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유통시장(사업보고서)의 허위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원고가 손해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전삼현 2007, 175). 그러나 미국은 디스커버리제도(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사전에 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어 원고측이 피고의 허위공시를 입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이 지수, "미국 집단소송제 폐해 설득력 없어" 중앙일보 2005년 4월 27일).

고서에 허위기재가 있음을 알지 못했고, 특히, 경리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이사들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신뢰한 이상 허위기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중 김우중 회장과 전 대표이사, 재무담당이사는 스스로 분식결산을 공모하였으므로 과실이 없음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의 등기이사들도 상법상 재무제표는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리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측은 <표 1>에 기재된 일련의 사실들 들어 원고들이 대우전자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사업보고서상의 재무제표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선의의 투자자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첫째,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의견이 담긴 1998년도 감사보고서가 1999년 3월 31일 일만에 공개되었고, 둘째, 1999년 5월 4일에는 대우전자에 대한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BB+) 수준으로 강등되었으며, 셋째, 대우그룹과의 빅딜을 시도하던 삼성그룹이 대우전자의 자산과 부채를 실시한 결과 인수할 가치가 없음을 1999년 5월에 발표하였다. 넷째, 대우전자의 자금난에 대한 정보가 이미 신문에 보도되었고, 마지막으로 1999년 8월 26일에는 대우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재무

구조개선작업(workout)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피고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위 사실들은 대우그룹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재무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정황들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원고들이 대우전자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허위의 기재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측은 원고들이 이미 재무제표가 실제와 다를음을 알고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한편, 또 다른 피고에 해당하는 외부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감사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제3장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에 부정과 오류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발견하고도 외부감사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사과정에서도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재판부는 외부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2.3 손해액 산정

대우전자와 김우중 회장을 포함한 대우전자의 등기이사를 상대로 한 사업보고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1997년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1998년 3월 31일부터 대우전자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결과가 발표되어 분식회계가 일반인에게 알려진 1999년 11월 4일 직전일 사이에 주식을 취

<표 1> 1998년 감사보고서 공표이후 발생 사건

날짜	사건
1999년 3월 31일	1998년 대우전자의 감사보고서 일반 공시
1999년 5월 4일	대우전자의 신용등급 BBB(-)에서 BB(+로 하향조정 공시
1999년 5월경	삼성그룹 대우전자를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 공식 발표
1999년 7월 19일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 발표
1999년 8월 26일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작업(Workout) 개시

득하여 그 후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본 손해에 한정된다. 또한 대우전자의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한 감사보고서의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1997년도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1998년 2월 28일부터 위와 동일하게 1999년 11월 4일 직전일 사이에 주식을 취득하여 그 후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본 손해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고 중 1997년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1998년 2월 28일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최명수 2003, 209).

원고의 손해액 산정은 기본적으로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것처럼 원고의 매수가액에서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가격을 공제한 가격이다.¹¹⁾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일부가 허위공시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손해액이 산정되었으나 상고심에서는 피고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진 이후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이후의 주가변동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변론종결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원고의 피해액은 매수가액에서 위에서 언급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 공표이후의 정상주가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고, 최종 파기환송심에서는 구체적으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 공표이후의 정상주가를 1999년 12월 10일의 870원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결

정하였다.

4.2.4 외부감사인의 연대책임 범위

제1심 판결은 피해를 입은 원고들도 당시 대우전자의 건설하지 못한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음에도 다소 무리하게 주식을 취득한 과실을 일부 감안하고, 분식회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도를 참작하여 대우전자, 김우중 회장, 대우전자의 전 대표이사 및 전 재무담당이사에게는 원고 피해액의 40%, 외부감사인에게는 30%, 분식회계의 관여가 미약한 사외이사를 포함한 나머지 이사에게는 20%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였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은 분식회계를 주도한 대우전자의 이사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측은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한 외감법 제17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일률적으로 30%의 배상책임을 부과하였고,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원고의 과실을 너무 높게 인정했으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으며, 그 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종적으로 피고의 피해액 배상을 각 책임주체에게 일률적으로 60%로 결정하였다.

V. 시사점 및 결론

대우전자의 분식회계는 그룹회장이 회사의 저조

11)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액은 피해자의 매수가액과 매수당시 허위공시가 없을 경우의 해당 주식의 진정한 가치와의 차액이라 할 수 있으나 허위공시가 없을 경우의 해당 주식의 진정한 가치산출을 위해서는 당시 주가의 등락분 중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하락분을 가려내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이를 증권취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곤란하게 만들게 된다(김진식 2006, 145-1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3. 선고. 2000가합78858). 따라서 증권거래법은 제15조에서 손해액의 산출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책임을 면제하고 손해배상의무자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투자자는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3. 선고. 2000가합78858).

한 성과를 감추기 위하여 거짓의 성과를 재무제표에 나타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관련 임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에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하였고, 여러 비용항목을 매출채권으로 계정 대체하여 비용을 낮추며, 다시 가공 매출채권을 어음차입금과 상계 처리하여 부채를 누락시켰다. 그밖에도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폐기·불용된 유형자산에 대한 손실을 누락시켰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비용을 과소 계상하였다. 대우전자의 이러한 분식회계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함께 하는 경우에도 소유경영자의 전횡을 막고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를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업지배구조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대우전자의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실사, 미착품에 대한 검사, 부외부채에 대한 조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마땅히 해야 할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였고,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요청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외부감사인이 재벌기업인 대우전자의 감사위험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했거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향후 이와 같은 감사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부감사인은 내부적으로 공인회계사 윤리규정과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 차원의 감사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통해 감사품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입증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표본감사 설계에 감사위험 평가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며 감사팀 내부적으로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심리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외부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독기관은 감사보고서 감리는 물론 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를 강화하여 회계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이후 국내에서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많은 법규와 제도가 도입되었다.¹²⁾ 먼저, 기업 내부의 자체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가 증권거래법과 상법에 각각 입법화 되었고,¹³⁾ 대표이사 등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인증서명제도가 도입되었으며(자본시장법 제119조 제5항),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2003년 외감법에 명문화 되었다(외감법 제2조의 2). 더불어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감리대상 선정방식을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감사인에 감리지적시 벌점을 부과하여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시에

12) 소개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는 대우전자 한 개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도입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사회적 파장이 큰 일련의 분식회계를 겪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내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상법 제542조의 8은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415조 2의 제2항은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통합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일 것을 충족해야 하고, 제2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며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참작토록 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감리를 추가하였다(외감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또한 감사인의 협상력은 재벌그룹의 경우에는 감사보수도 크고 계열사도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다. 감사뿐만 아니라 관련 용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거나 다소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피감사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폐단을 개선하고자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비감사업무 내용을 명문화(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하였고, 동일 외부감사인이 상장법인의 3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 자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화(외감법 제4조의 2 제1항)하였다. 그밖에도 상장법인인 경우 외부감사인의 동일한 이사가 연속하여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게 하고, 상장법인에 대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행하여 교체된 이사는 3개 사업연도 이상의 휴지기간을 갖도록 의무화 하였으며(외감법 제3조 제4항) 상장법인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수행 이후에는 감사업무의 보조자(공인회계사)의 3분의 2이상을 교체하도록 규정하였다(외감법 제3조 5항).

한편, 소액주주 359인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및 대우전자 이사와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항소, 상고에 이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등 우여곡절 끝에 소송제기 이후 약 8년이 지난 끝에 피해액의 60%를 가해자인 대우전자의 이사와 외부감사인이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실제로 약 100억원에 달하는 전체 배상금의 대부분은 변제력이 있는 외부감사인이 배상하였다.

본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통하여 구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에 규정된 허위공시와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실제로 소송을 통하여 관련자에게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분식회계를 통하여 부실표시를 직접 행한 경영인과 이를 적발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에게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고, 실제로 외부감사인이 배상액의 대부분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도 없지 않다(곽관훈 2005, 142; 김건식 2006, 148; 이창우 등 2007, 15-16).

이와 관련하여 2006년 10월 이계안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은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외부감사인의 연대책임을 고의의 경우를 제외하면 법원이 정한 과실의 정도에 비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의원입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소위원회 심사결과, 피해를 본 투자자의 적절한 손해배상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김주영 2008, 8-9). 그러나 이 의원입법안을 통하여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관련 입증책임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감사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외감법 제17조 제5항을 개정하였다.¹⁴⁾ 앞으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증가와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시행으로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행의 연대책임 부과와 대안으로서 손해의 공평부담을 위한 비례책임 부과에 대한 논쟁은 더욱 증폭되고, 회계업계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위해 비례책임제와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사전에 미리 정하는 책임상한제¹⁵⁾ 등의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14) 김현호, "부실회계 입증책임 회계감사인에게 지울 수 없어" 세정신문 2008년 3월 5일.

15)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상한제는 회사(피감사인)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상한제와 피해를 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한제가 있다. 감사인과 제3자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이창우 등 2006, 21).

참고문헌

- 곽관훈(2005),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제한제도의 도입," *상장협*, 51, 134-158.
- 김건식(2006), *증권거래법*, 두성사, 제4판.
- 김주영(2008), 사건번호 2007나107783, 107790(병합) 손해배상 준비서면, 한누리 법무법인.
- 대법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 _____, 1997.9.12. 선고, 1996다41991 판결.
- _____, 2007.10.25. 선고, 2006다16758, 16765(병합)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1.18. 선고, 2005나22673, 22680(병합) 판결.
- _____, 2008.9.26. 선고, 2007나107783, 107790(병합)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3. 선고, 2000가합78858, 85856(병합) 판결.
- 이명곤·이화득(2004), "회계실패의 원인과 해결 방안," *회계저널*, 13(2), 181-224.
- 이창우·고종권·전규안(2006),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제도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5(2), 1-30.
- 전삼현(2007), "증권집단소송제의 현재와 문제점," *기업소송연구*, 6, 150-187.
- 최명수(2003), *뒤집어보는 경제 회계부정 이야기*, 굿인포메이션.

〈부록〉

구 증권거래법과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허위거래와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의 비교

항목	구 증권거래법	현 자본시장법
발행시장에서의 허위거래에 대한 배상책임	제14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거래에 대한 배상책임	제186조의 5	제162조 제1항
손해배상액 산정과 면책규정	제15조 제1~2항	제126조 제1~2항, 제162조 제3~4항
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6조, 제186조의 5	제127조, 제162조 제5항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청구권 소멸	제197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면책규정	제197조 제2항	제170조 제2~3항

Accounting Fraud, Audit Failure, and Investors' Lawsuit in Daewoo Electronics

Jongchan Park* · Geum Joo Jahng**

Abstract

The accounting fraud of Daewoo Electronics was initiated by verbal instructions from the former chairman of Daewoo Business Group, Kim Woo-choong, who directed the CEO of Daewoo Electronics to manipulate account books in order to cover poor performance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specific methods of the manipulation include overstatement of inventory, understatement of cost of goods sold, recognition of fictitious receivables, omissions of notes payable, understatement of the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omissions of losses in equipments scrapped or disused, and understatement of reserves for retirement allowance. Also, the external auditor of Daewoo Electronics omitted or neglected compulsory audit procedures in the process of physical inventory and in the inspection of goods in transit, off-balance-sheet-liabilities, and reserves for retirement allowance, and ignored or did not take appropriate actions when they found some facts that might indicate false representations and frau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lawsuit against Kim Woo-choong, the directors of Daewoo Electronics, and the external auditor over the accounting fraud and the audit failure took about six years to the final verdict, which ordered the defendant to pay for 60 percent of the plaintiff's damages. However, it was the external auditor with a paying ability who actually paid the most of the 10 billion won indemnities. The current law seems to have a somewhat unreasonable aspect in that the external auditor who does not find accounting fraud have the same level of liabilities as the management who in fact conducts accounting fraud, and faces criticism of impartiality in that external auditors who have deep pockets end up paying most of indemnities. As Korea adopted Securities Class Action in 2005 and lawsuits over accounting fraud and audit failures increase, the controversy is expected to erupt over the jointly and severally liability under the current law in security for victim compensation versus proportionate liability as an alternative for impartial compensation among indemnitors.

Key Words: Accounting fraud, audit failure, audit procedure, auditor liability.

*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eaching Note〉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그리고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

Synopsis

본 사례는 소액주주 359인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주요 쟁점들을 기술하여 현행법에 규정된 허위공시와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실제로 소송을 통하여 어떻게 부과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례학습의 자료를 제공한다. 대우전자의 분식회계는 그룹회장이 회사의 저조한 성과를 감추기 위하여 거짓의 성과를 재무제표에 나타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관련 임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매출원가의 과소계상, 가공매출채권의 인식, 어음차입금의 누락,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 폐기·불용된 유형자산의 손실인식 누락, 퇴직급여충당금의 과소계상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한편, 대우전자의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실사, 미착품에 대한 검사, 부외부채에 대한 조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마땅히 해야 할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였고,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8년여에 걸친 긴 재판 결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및 대우전자 이사와 외부감사인은 피해액의 60%를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전체 배상금의 대부분은 변제력이 있는 외부감사인이 배상하였다.

Teaching Point

본 사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에 관한 내용으로 분식회계의 진행경위와 회계장부를 조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대우전자의 분식회계는 그룹회장의 지시하에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경영진의 전횡 방지, 회계투명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진을 적절히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것이 기업지배구조임을 설명한다. 분식회계의 방법에서는 재고자산(특히 미착품)은 외부감사인이 실사하는데 있어서 시간 및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재고자산의 과대계상과 매출원가의와의 관계, 그리고 분식회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채의 과소계상을 위하여 대우전자는 자신이 발행한 기업어음(어음차입금)을 장부에서 누락시켰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둘째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분식회계에 사용되었던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 부채의 감사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고, 특히

1998년도 감사에서는 실무책임 회계사가 '의견거절'을 건의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담당파트너가 '한정의견'으로 변경한 사실은 외부감사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다. 한편, 여기서 이러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감사인이 재벌기업인 대우전자의 감사위험을 낮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감사인의 협상력은 재벌그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감사보수도 크고 계열사도 많으며 감사뿐만 아니라 관련 용역이 많이 발주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거나 다소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피감사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대우전자에 대한 부실감사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손해배상소송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먼저 현행법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규정하는 바를 학생들에게 숙지시키고, 다음으로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허위 기재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거나 원고가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사실을 알고 주식을 취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을 설명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면 그 만큼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도 언급한다. 실제로 대우전자의 소송에서는 어떤 점들이 주요 쟁점이 되었고, 피고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거에 대하여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최종 판단을 내렸는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사례수업의 진행을 위해 수업 전에 미리 발표할

팀을 선정하고 발표팀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에게는 사례를 읽고 사례에 대한 1가지 이상의 질문 작성과 Assignment Questions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도록 과제를 부여한다. 수업은 먼저 발표팀이 15분간에 걸쳐 사례내용을 발표하고, 강사는 발표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며 추가로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다. 이후 나머지 시간은 Assignment Questions에 대한 답안을 학생들 스스로가 자유토론 형식으로 발표하도록 유도한 후 모범답안을 제시한다.

Assignment Questions

1. 현재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연대책임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외부감사인들이 주장하는 비례 책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느 제도가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현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이 규정하는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소에 어떠한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서술하시오.
3.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도입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주요 특징을 서술하고, 기존의 법률하의 손해배상소송제도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4.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는 공인회계사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과 갈등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외부감사팀의 담당파트너와 계정 담당공인회계사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계정 담당공인회계사가 담당파트너로부터 압력을 느끼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를 서술하시오.

5.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이 무엇인가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해보고, 그 소송의 주요 내용과 재판결과를 서술하시오.

에는 각자 자신의 책임에 비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이창우 등 2006, 16). 그러나 미국에서도 책임주체 중의 일부가 변제력이 없는 경우는 나머지 책임주체들이 여전히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김주영 2008, 9).

Analysis & Answers

1. 현재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연대책임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외부감사인들이 주장하는 비례책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느 제도가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현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이 규정하는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소에 어떠한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서술하시오.

자본시장법과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감사인의 연대책임과 외부감사인이 대안으로서 주장하는 비례책임의 장단점 분석은 아래 표와 같다.

외감법 제17조 제6항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회사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감법 시행령 제17조의 3과 4는 외부감사인이 적립해야 할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의 규모와 시기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립금은 설립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미만인

참고로 미국은 1995년 증권민사소송법에 비례책임조항을 신설하여 공동피고가 증권사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그 외

	연대책임	비례책임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 피감사인에 대한 감독의 동기를 유발시켜 분식회계를 방지하는 효과(최정식 2008, 2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의 공평부담원칙에 부합. • 변제력 있는 회계법인과외의 합의금을 노린 소송의 남발 방지 효과.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식회계의 주도자와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에게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므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변제력이 있는 외부감사인이 사실상 대부분의 손해액을 배상하므로 손해의 공평부담원칙에 위배. •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으로 감사비용이 증가하고 감사수입도 상승. •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사기피, 부실감사의 위험이 있는 감사인을 통한 의견구매 등으로 감사의 부실화 유발(전팔 2005, 6). • 손해배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감사인이 보수적이고 경직된 감사의견 표명(전팔 200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구제의 실효성 저하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함. •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여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

경우에는 5천만원,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이다. 연간적립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연간 회계감사보수총액의 4%를 적립한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한국공인회계사협회가 관리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배상하는 회계법인별 한도는 당해 회계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적립금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외감법 시행령 제 17조의 6 제2항), 공인회계사회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때에는 배상책임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금액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외감법 시행령 제17조의 7).

또한 손해배상공동기금과는 별도로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8조 제1항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외에도 현재 17개 회계법인은 전문가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였으며 총 보험가입금액은 8,722억원이며 이중 4대 회계법인이 이 금액의 96.3%를 차지하고 있다.¹⁾

3.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도입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주요 특징을 서술하고, 기존의 법률하의 손해배상소송제도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여럿 있을 때 그 중의 하나 또는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의 결과를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다(김정호 2002, 11).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일부 시행

되었고, 2007년부터는 증권과 관련한 4개 부분에서 발행한 피해에 대해서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 포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개 부분에서 발생한 피해란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 작성에 따른 피해, 미공개 내부자거래 및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 사업보고서, 분기 및 반기보고서의 허위 기재에 따른 피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관련 4개 부분의 피해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므로 증권집단소송제라 일컫는다. 미국의 경우는 증권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공산품 영역에서도 적용된다.

증권집단소송제의 진행은 먼저 피해를 입은 투자자와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변호사 강제주의)가 법원에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면 법원은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소송허가 신청을 낸 피해자가 50명 이상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0.01% 이상이 되는지 등 대표당사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소송허가 요건을 검토한다. 일단, 법원에 의해 허가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우편물과 신문광고 등의 방식으로 증권집단소송절차 개시를 알리고(대표당사자가 비용 부담), 이 때 자신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여 소송에서 빼 줄 것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동일한 피해를 본 사람은 재판 결과에 따른 같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소송과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피해자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 소송을 위임할 수 있게 하는 선정당사자제도가 가능하였다.²⁾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의해 피해자 구

1) 조세일보 "최근 3년간 회계법인 소송은 26건...2건 패소" 2008년 9월 2일 최정희 기자.

2) 흔히 언론에서는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에 의한 소송도 집단소송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것은 증권관련 4개 분야에만 한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로 환경문제,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다수 피해자에 의한 소송은 공동소송 또는 선정당사자제도에 의한 소송을 말한다.

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원고를 모집하는 등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금지되어 있어 소송이 쉽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김정호 2002, 33). 또한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의 경우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한 피해자만이 판결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는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일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송의 결과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 이전의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제도보다 소송에 참여할 공동피해자를 찾는 노력이 경감되고, 특히 이전에는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증권집단제하에서는 소송제기가 이전보다 용이하여 피해자 구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더불어 증권집단소송제는 미국의 경우 변호사가 성공보수제를 기반으로 비용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의 소송비용 부담이 적게 된다.

참고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제도, 증권집단소송제와는 별도로 주주대표소송이라는 것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29조 제1항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2인 이상이 주주권을 공동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는 해당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30일 이내로 제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가 직접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소수주주권의 하나인 주주대표소송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승소하면 피고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회사에 귀속되고 소송을 수행한 주주는 소송비용을 변제받을 뿐이며 그 이상의 이익은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제도, 증권집단소송제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회사가 된다(최정식 2008, 17).

한편,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에서도 이미 문제점으로 드러난 합의금을 노린 소송의 남발이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남소의 문제점과 과도한 변호사 수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5년, 1998년, 2005년 세 번에 걸쳐 집단소송제를 개정하였다. 우리나라 증권집단소송제는 무분별한 소송의 남발로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당사자 자격을 피해자가 50인 이상, 피해자 전체의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이 0.01% 이상일 것으로 제한하고, 소송제기 이전 3년동안 3건 이상의 증권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사람은 증권집단소송제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는 공인회계사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과 갈등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외부감사팀의 담당파트너와 계정 담당공인회계사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계정 담당공인회계사가 담당파트너로부터 압력을 느끼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를 서술하시오.

계정 담당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상사인 담당파트너와 대립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공인회계사는 전문가로서 해당 관련사실과 관련된 윤리적 사안 및 윤리강령을 고려하여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윤리적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1

단계로 조직 내부의 적절한 구성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만일 현실적으로 조직 내의 다른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2단계로 회계법인 내부에서 내부감시 기구 등에 갈등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중요한 갈등이 여전히 해결될 수 없다면 3단계로 해당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내의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도 윤리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수행팀 또는 해당 업무에서 철수하거나 업무수임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회계법인 또는 소속기관에서도 사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 100.18~21).

5.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이 무엇인가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해보고, 그 소송의 주요 내용과 재판결과를 서술하시오.³⁾

국내 최초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주)홍양의 소액주주 6명이 1991년 12월 17일 (주)홍양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경원합동회계사무소의 담당회계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⁴⁾ (주)홍양은 소형 가전기기를 생산하는 상장기업으로 부도나기 직전년도인 1990년 실적은 87억 3,900만원의 적자를 보았음에도 5억 4,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외부감사인은 이러한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측은 1991년 10월 당시 증권관리위원회(현 금융위원회)가 1991

년도 부도가 발생한 9개 상장기업 중 홍양을 비롯한 5개사가 결산보고서를 조작했고 회계법인이 이들의 분식결산을 묵인했다는 감리 결과를 증거로 삼아 회계사의 과실을 주장하였다.⁵⁾ 1993년 2월 23일 발표된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일부 승소로서 피고는 원고 6명중 4명에게 주식 취득가격과 변론 종결시점인 현 시장가격의 차액인 7,325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⁶⁾ 원고 6명중 2명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손해를 본 선의의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외부감사인으로서 중요한 감사절차를 생략 또는 실시하지 않는 등 회계감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⁷⁾

참고문헌

김정호(2002),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증권집단소송제, 자유기업원.
 김주영(2008), 사건번호 2007나107783, 107790(병합) 손해배상 준비서면, 한누리 법무법인.
 이창우·고종권·전규안(2006),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제도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5(2), 1-30.
 전광(2005), "증권집단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과 항변"(증권집단소송 ISSUE 시리즈 10), 전국경제인연합회.
 최명수(2003), 뒤집어보는 경제 회계부정 이야기, 굿인포메이션.
 최정식(2008),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삼영사.

3) (주)홍양 소액주주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내용은 최명수(2003, 47-52)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4) 당시 원고측 담당 변호사였던 고승덕 변호사는 (주)홍양의 부도 이후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주)홍양의 주주명부를 입수한 뒤 소액주주를 모아 소송을 제기하였다(최명수 2003, 51).
 5) 한국경제신문, "부실감사에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 1991년 12월 17일.
 6) 한국경제신문, "부실회계감사로 첫 배상판결.. 투자자 손실보상" 1993년 2월 23일.
 7) 한국경제신문, "대법, '부실회계 배상' 판결 .. 홍양주 투자자 상고심서" 1995년 6월 7일.